

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(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)

① 감사실시 개요

- 감사기간 : 2010. 6. 14. ~ 6. 25. (10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담당 사무관 외 4명
- 주요 감사사항
 -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
 - 출연금 등 수입금 관리실태
 - 물품구매·관리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업무 수행실태

② 기관 현황

- 조 직 : 중앙회(2본부 5국), 1부설, 10개 시·도회
- 정 원 : 103명
- 설립근거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
- 주요사업
 - 공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 -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지도와 공사시공실태조사
 -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
 - 노임단가 및 표준품셈 관련 업무 등

③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

제목	지적내용	처분요구사항
<p>① 국가위탁업무 처리 부적정</p>	<p>◎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57조제1항 별표 9에 따라 회원사·비회원사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,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발주처 등 외부기관이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제공 8,207건에 대해 수수료 면제</p> <p>◎ 회원사 및 회원사에 근무 중인 정보통신기술자나 감리원에 대한 정보제공 84,871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법정 수수료가 아닌 자체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</p> <p>◎ 비회원사에 대해 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탁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으로 위탁업무 수행</p>	<p>기관경고</p>
<p>② 계약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</p>	<p>◎ 사업부서 계약업무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0. 4. 28 「주전산기 교체 등 정보인프라 개선사업」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서(기획홍보국)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, 계약부서가 처리해야 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,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등을 추진 <p>◎ 예정가격 작성 소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정보통신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 	<p>기관경고</p>

	<p>기준에 관한 연구(계약일:'10.4.5)' 및 '주전산기 교체 등 정보인프라 개선사업 (계약일: '10.5.31)'에 대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견적가격 및 제안가격을 근거로 예정가격 결정</p> <p>◎ 물품 구매업무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총회 등 개최 시기가 예정되어 있어 긴급하게 구입할 사유가 없는 행사 기념품을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	
<p>③ 접대성 경비 편성 및 집행 처리 부적정</p>	<p>◎ 접대성 경비 구분 편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성 예산을 특정한 목적 없이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로 구분하여 각각 61,200천원과 23,400천원을 편성하고, 전용 등 특별한 절차나 별도의 집행지침 없이 상호 혼용하여 각각 61,172천원과 20,667천원을 집행 <p>◎ 접대성 경비 집행 증빙서류 미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·접대비 집행 및 지출 증빙서류 미비 	<p>기관주의</p>